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 審査經過

- 가. 提出日字 : 2001. 1. 29
- 나. 提出者 : 瑞山市長
- 다. 回附日字 : 2001. 1. 30
- 라. 上程日字 : 2001. 2. 14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稅務課長 文哲柱)

가. 提案理由

-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시한을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대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의거 폐지 내지 신설되는 조례의 정비와 감면 범위 및 기타 관련법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조문 등을 개정하여 시행 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감면 범위 조정(안 제2조 제2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 폐지(안 제3조)
 - 지방세법에 반영되었으므로 폐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 감면 범위 축소(안 제12조제1항제1호)
 - 서민주택의 감면 범위인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 조정
형평성 유지
-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세 감면 규정 폐지(안 제13조의2)
 - 감면 시한이 만료(1999. 2. 28) 되었음에 따라 폐지
-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건물에 대한 감면(안 제18조제2항)
 - 10년 이상 미 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 면제
-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안 제24조의2)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 할시에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5년간 감면
-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면제(안 제24조의3)
- 감면조례의 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부칙 제2항)
-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감면범위 등을 간결, 명확하게 정비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시행토록 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의 범위안에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93호
----------	--------

제출년월일 : 2001. 1. 9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개정이유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시한을 행정자치부의 준칙안대로 2003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의거 폐지 내지 신설되는 조례의 정비와 감면 범위 및 기타 관련법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조문 등을 개정하여 시행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세 감면 범위 조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 승용자동차의 범위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 나.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 폐지 (제3조)
 - 지방세법에 반영되었으므로 폐지
-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 감면 범위 축소(제12조제1항제1호)
 - 서민주택의 감면 범위인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 조정
형평성 유지
- 라.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세 감면 규정 폐지(제13조의2)
 - 감면 시한이 만료(1999. 2. 28) 되었음에 따라 폐지
- 마.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건물에 대한 감면(안 제18조제2항)
 -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를 100분의50 경감 하고, 도시계획세 면제

바.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안 제24조의2)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 할시에
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5년간 감면

사.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면제 (안 제24조의3)

아. 감면조례의 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부칙제2항)

자.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감면범위 등을 간결, 명
확 하게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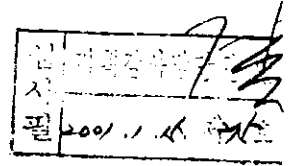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행정자치부 표준안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 의견접수 사항 없음(11. 30입법예고)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산시시세의”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산시시세의”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배우자 또는”을 “배우자”로 하고,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 한다.”를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 한다.”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 한다)

제3조를 삭제 한다.

제4조제1항중 “배우자 또는”을 “배우자”로 하고,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 한다.”를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 한다.”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 한다)

제3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제8조 본문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하고,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동조제4호중 “사회교육을”을 “평생교육을”로 하고,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하고, 동항제3호는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에서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2세대이상을”을 “국내에 2세대이상을”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를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 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를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로 하고, 동항제2호중 “85제곱미터이하인”을 “60제곱미터이하인”로 하고, 동항제3호중 “85제곱미터이하인”을 “60제곱미터이하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과 제2항 및 제3항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각각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 한다.

제14조의본문중 “농지세률”를 “농업소득세률”로 한다.

제17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 한다.

②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9조제1호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을 “건축물에 대하여는”으로 하며,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20조중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 한다”를 “그 민간출자 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22조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한다.

제23조본문중 “전쟁기념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를 “전쟁기념사업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로 하며, “그 고유업무에”를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로 하고, “동사업회에”

를 “그 사업회에”로 한다.

제23조의1본문중 “한함”을 “한한다”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50을 경감 한다.”를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 한다.”로 한다.

제24조중 “1,000분의3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3을”로 한다.

제24조의1본문중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으로 하고, “당해”를 “그”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산시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서산시시세의</p> <p>-----</p> <p>-----</p> <p>-----</p> <p>-----</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2000. 4. 10></p> <p>②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2000. 4. 10></p> <p>②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style="text-align: right;">-----배우자</p>

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 ~ 4. (생략)

③ (생략)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2. ~ 4. (생략)

② (생략)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평생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 2. (생략)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생략)

②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현행과 같음)

②-----

당해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
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
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
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
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
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
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
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
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
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
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

-----국내에 2세대 이
상을-----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
획세를-----

1.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
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
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에-----

2. -----60제곱미터이하인-----

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3. -----60제곱미터이하인-----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
의 50을 경감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
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
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
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
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
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
트형공장의 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불 받거나
신고불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
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

②

③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하는 날부터 5년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

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삭 제>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농업소득세

제17조(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

제19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1.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2.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제22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3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제23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
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3조의1(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농
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
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
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
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1. (생략)
2. (생략)

제2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
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
해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
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

그 사업회에

제23조의1(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한한다)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
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2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신 설>

<신 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벤티치기업육성촉진지구

에 대한 감면) 벤티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티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티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4조의3(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